

한국편 

aTget

GLOBAL EXPORT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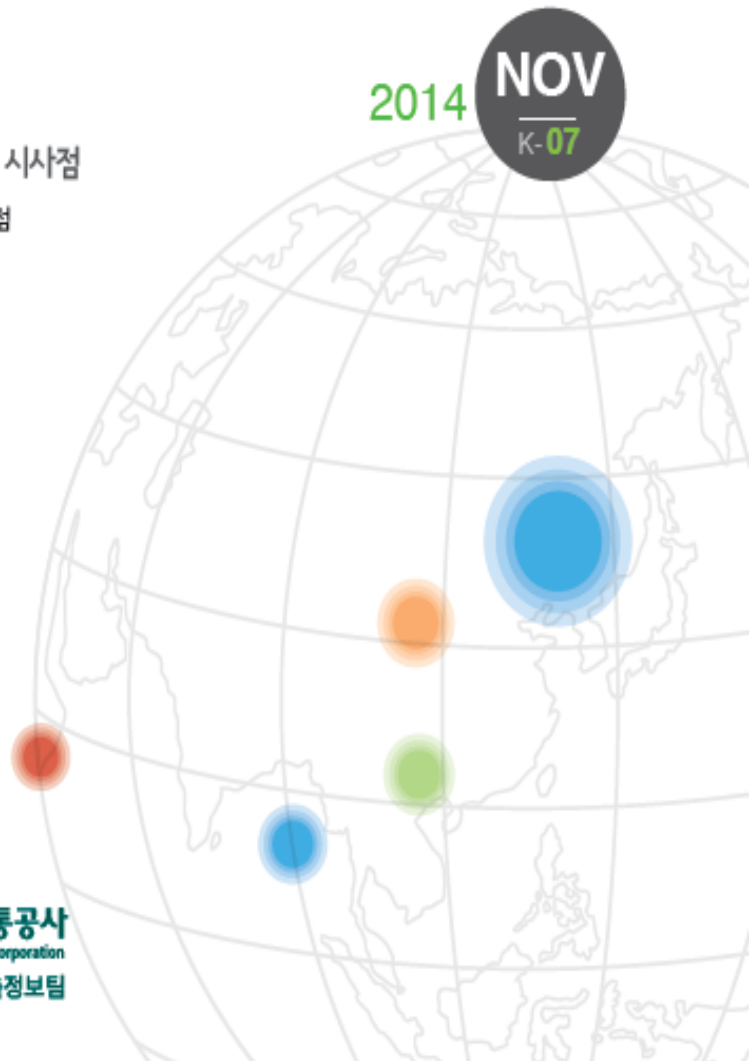
2014

NOV
K-07

한·중 FTA 타결: 평가 및 시사점

- I. 한·중 FTA 타결: 평가 및 시사점
- II. 환율 변동의 원인 및 영향
- III. 국제 금융시장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농수산물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한·중 FTA 타결: 평가 및 시사점

I . 한·중 FTA 타결: 평가 및 시사점

- | | |
|-----------------------------------|----|
| 1. 한·중 FTA협상 타결 경위 | 5 |
| 2. 한·중 FTA 농축산분야 주요 내용 | 7 |
| 3. 한·중 FTA의 평가 및 국내 농수산부문에 주는 시사점 | 12 |

II . 환율 변동의 원인 및 영향

- | | |
|------------------|----|
| 1. 환율 동향 | 21 |
| 2. 미, 일 양국의 통화정책 | 23 |
| 3. 향후 전망 및 영향 | 26 |

III . 국제 금융시장

- | | |
|------------|----|
| 1. 국제 외환시장 | 31 |
| 2. 국제 상품시장 | 32 |

I. 한·중 FTA 타결: 평가 및 시사점

작성자: 서진교

1. 한·중 FTA협상 타결 경위
2. 한·중 FTA 농축산분야 주요 내용
3. 한·중 FTA의 평가 및 국내 농수산부문에 주는 시사점

- 한·중 FTA는 2012년 5월 공식협상이 개시되기 이전 2005년부터 8년에 걸친 탐색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농수산부문의 민감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 한·중 FTA는 제7차 협상을 통해 나타난 1단계 협상 결과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민감품목 확보로 실질 개방 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실제 협상 결과도 예상과 다르지 않아 쌀, 보리를 비롯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버터, 치즈 등 주요 축산물과 낙농품,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핵심 과일,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와 무, 배추 등 주요 채소 등이 모두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역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인도와 EFTA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준의 FTA로, 특히 동식물위생검역도 현행 WTO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타결되어 한·중 FTA가 국내 농수산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FTA는 구매력을 갖춘 13억 농식품 소비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대중 농식품 수출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향후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
- 비록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수출 농식품에 대해서 양허제외 또는 15~20년의 관세 철폐를 설정하여 단기간 내 관세철폐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농식품수출에서 관세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는 비관세조치의 완화를 기대할 수는 있다.
- 특히 그 동안 중국 현지 우리 농식품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통관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전국 지역세관 모두에 일관된 관세법을 적용함은 물론 관련 통관정보의 요청과 그에 응답을 하는 공식 창구가 지정되었다. 아울러 신규 비관세조치 도입시에도 사전에 이를 공표하며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 ◆ 이에 따라 한·중 FTA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확대는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힘입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대중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도 이러한 기초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 한·중 FTA를 통해 전반적으로 WTO의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강화된 것은 고품질·안전성을 무기로 얼굴있는 브랜드화를 통한 우리 농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 ◆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이 최초로 독립챗터로 인정한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에 우리나라의 주요 농식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한류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 ◆ 기타 수산부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양국간 최대의 현안이었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향후 중국정부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1. 한·중 FTA협상 타결 경위

1) 공식협상 개시 이전 8년여의 준비단계

- ❖ 한·중 FTA 시작은 2004년 9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으로 여기서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2005년부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간의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가 추진되어 2006년 11월 종료되었다.
- ❖ 민간공동연구에 이어 2007년부터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계속되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최종보고서 작성단계에서 민감분야 보호방안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로 3년여를 끌면서 2010년 5월 어렵게 마무리되었다.
 - “한·중 양국간 민감성 문제는 적절한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한다.”고 최종 합의
- ❖ 그리고 다시 2010년부터 양국 정부간 사전실무협의를 이어졌고, 2012년 5월에 이르러서야 한·중 FTA 제1차 공식협상이 중국(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 ❖ 결국 한·중 FTA는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8년간 사전준비과정을 거쳤다.

2)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 공식협상

- ❖ 한·중 FTA협상은 그 때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다른 FTA협상과 달리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 제1단계 협상에서는 협상의 틀 내지 기본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2단계는 1단계 협상에서 도출한 합의에 기초하여 품목별 구체적인 시장개방 폭을 결정하는 협상이었다.



◆ 2012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2013년 9월까지 일곱 차례의 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가 도출되었고, 1단계 합의 결과 한·중 FTA로 인한 농수산분야의 피해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제1단계 합의의 핵심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으로 상품을 구분하고, 초민감품목에 대해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 품목수 기준 10%는 HS 10단위 기준으로 1,223개 세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의 세번수는 약 200여개이고, 대중 농수산물 수입액도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7% 수준이다.
- 따라서 초민감품목으로 세번수 10%, 수입액 15%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중 FTA가 타결되더라도 농수산분야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 제8차 협상(2013년 11월)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갔으며, 2014년 11월의 14차 협상을 통해 한·중 FTA협상은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제22차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은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 한·중 FTA 협상 일지 ■

일시	주요 내용
2004. 9	ASEAN+3 경제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
2005. 3 ~ 2006. 11	2년여 걸친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2007. 3 ~ 2010. 5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10. 9 ~ 2012. 3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2012. 2	한·중 FTA 공청회
2012. 5	제1차 공식 협상 (베이징)
2013. 9	제7차 공식협상 (웨이팡) : 1단계 합의 도출
2013. 11 ~ 2014. 11	제8차 ~ 제14차 공식협상
2014. 11. 10	한·중 FTA 실질 타결 선언

출처: FTA korea (www.ftakorea.co.kr) (2014.11.29 접속)

2. 한·중 FTA 농축산분야 주요 내용

1) 상품양허

● 전체 농축산물 1,611개(HS 10단위 기준)를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3%), 일반품목 589개(36.6%)으로 구분하였다.

● 초민감품목은 다시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한 548개 품목과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는 부분감축품목(26개), 그리고 관세를 깎지는 않지만 일정한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TRQ품목(7개)으로 구분된다.

* 쌀은 아예 FTA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등 주요 핵심 축산물은 모두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여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등도 초민감품목으로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 배추, 당근 등과 인삼류도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다.

* 아울러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과 대두유,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 기반 유지에 필요한 품목도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다. 단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은 관세를 부분 감축하였다.

● 민감품목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과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도 20년 동안 균등히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와 10년째 또는 12년째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가 11년째 또는 13년째 가서 관세를 감축하여 잔여기간 동안 관세를 철폐하는 비선형 감축방식 품목으로 구분된다.

* 일반적으로 초민감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민감품목을 설정하였다.

* 기타 한약재, 기타 조제과실견과류, 기타 과실의 잼과 젤리 등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대체효과를 고려하여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10년째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11년째 또는 13년째부터 관세감축을 시작하는 비선형 관세감축방식이 적용된다.



- 일반품목은 신선농축산물 가운데 이미 관세가 낮아서 관세보호의 의미가 없거나 가축사료 등 원료농산물,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으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 기타 소나 번식용 돼지와 오리, 팜유와 그 분획물, 토마토나 양배추, 무, 채소 등의 종자가 즉시 관세철폐 품목이다.

- * 식물성유(조유), 라면 등이 5년 관세철폐, 그리고 포도주, 코코넛, 쿠키 및 크래커, 마요네즈, 아몬드(탈각) 등이 10년 관세철폐 품목이다.

● **반면 중국은 전체 농축산물 1,131개 중 초민감품목으로 102개(9.0%), 민감품목으로 304개(26.9%), 일반품목으로 725개(38.8)를 설정하였다.**

- 초민감품목은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 항상 양허를 제외해 왔던 전통적인 민감품목으로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유지, 담배 등이다.
- 민감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육류와 과채류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면 등으로 15년 및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 일반품목은 냉동 육류와 신선 과일류가 핵심이며, 특히 채소류는 신선·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 한·중 FTA 농축산분야 관세철폐계획: 한국 ■

구분		품목수 (개)	비중 (%)	주요 품목	
일반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기타 소, 오리(번식용), 돼지(번식용), 팜유와 그 분획물 증자(토마토, 무, 채소)	
	5년 철폐	209	13.0	식물성유(조유), 파스타, 사탕수수, 스파게티, 라면 등	
	10년 철폐	164	10.2	포도주, 쿠키와 크래커, 보드카, 마요네즈, 아몬드(탈각)	
	소 계	589	36.6		
민감 품목	15년 철폐	202	12.5	식물성유(정제유), 카레, 사과주, 신선/건조 과실(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커피크리머, 배합사료 등	
	20 년 철폐	11년차부터 감축	2	0.1	기타 조제저장 과실건과류, 기타 과일의 잼, 젤리
		13년차부터 감축	1	0.1	기타 한약재(기타 식물의)
		20년 균등 감축	236	14.6	도라지, 냉동 매니옥, 소주, 맥주, 땅콩유, 인삼음료, 기타 채소(설탕조제저장) 등
	소 계	441	27.3		
초 민감 품목	부분 감축	20% 감축	26	1.7	조제저장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 당면, 건 고사리, 들깨, 냉동 송이버섯, 기타 채소(조제저장)
		130%로 감축			매니옥, 밀조분, 종자용 옥수수, 귀리조분 등
	TRQ 설정	7	0.4	참깨, 건조 팥, 콩나물용 콩, 맥아, 고구마전분, 기타 콩	
	양허 제외	548	34.0	쌀, 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버터, 꿀,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호박,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소 계	581	36.1		
총 계		1,611	10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11.10),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 한·중 FTA 농축산분야 관세철폐계획 ■

구분	중국		주요 품목	
	품목수 (개)	비중 (%)		
일반 품목	즉시 철폐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 과실젤리, 채소 종자 등
	5년내 철폐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내 철폐	439	38.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신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소 계	725	64.1	
민감 품목	15년내 철폐	203	17.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20년내 철폐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소 계	304	26.9	
초민감 품목	부분 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 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소 계	102	9.0	
총 계		1,131	10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11. 10),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2) 동식물 위생검역(SPS)

◆ 관세 이외 큰 관심을 받아왔던 동식물위생검역은 WTO의 현행 동식물 위생검역협정 (SPS)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 한·중 FTA는 다른 FTA와 달리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의 농식품 분야 가격경쟁력 때문에 관세보다는 동식물위생검역조치가 양국간 농식품 교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이 때문에 협상 이전부터 동식물위생검역이 큰 화두가 되었다.

- 중국은 지속적으로 지역화 등을 협정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의 반대로 결국 지역화 등의 문구는 삭제되었고 현행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위생검역 수준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 지역화란 질병이나 병해충의 발생여부를 국가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제품의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아울러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동식물 위생검역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동식물위생검역위원회(СПS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3) 비관세조치(NTM)

- 동식물위생검역(СПS)과 무역기술장벽(TBT) 사안을 제외한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문제 발생시 협의기회를 부여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 한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이 문제 소지가 있는 비관세장벽을 확인할 경우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작업반을 개최할 수 있다.

- 아울러 제도적·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 새로운 비관세조치를 도입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공표하며,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 통관도 지역 세관간 일관적인 관세행정집행(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보장), 도착 후 48시간 이내 반출원칙, 부두직통관제 등이 적용된다.
- 특히 우리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중국 정부 내 중앙 및 성 단위로 담당기관이 지정되어 향후 비관세조치의 해소여건이 보다 강화되었다.

4) 기타

- 신선농산물(HS 01~14류)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적용된 반면 가공식품(HS 15~24류)은 대중 수출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특히 낙농품, 화훼, 채소류, 과일, 곡물 및 곡분 등에는 중국산 원료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이 설정되었다.



- 반면 소시지, 초콜릿, 인스턴트 커피, 과채류 조제품 등은 수입 농축산물 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해 수출할 수 있도록 원산지기준이 완화되었다.
- 농수산 분야 협력에서 농식품 무역 및 투자협력 강화 이외 양국의 수산협력 목적의 하나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명시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3. 한·중 FTA의 평가 및 국내 농수산부문에 주는 시사점

1) 평가

- 한·중 FTA는 농업분야에 관한 한 한-인도나 한-EFTA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저 수준의 FTA이다.
 - 품목 수 기준으로 한·중 FTA의 자유화율(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비율)은 64% 수준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인도나 EFTA와의 FTA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 한·중 FTA는 관세 철폐율이 100%에 육박하는 미국 및 EU와의 FTA 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농축산물을 DDA협상 이후에 논의하기로 약속한 한-칠레 FTA 보다도 자유화율이 낮다. 특히 자유화율이 낮아 농업계의 관심과 반발이 거의 없었던 한-아세안 FTA 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에 따라 한·중 FTA 발효가 국내 농수산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농식품이 갖는 광범위한 소비대체성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은 있을 것이다.

FTA별 농수산물 초민감품목 비중

구분	한·중 FTA	한-칠레	한- 아세안	한-인도	한-EU	한-미
즉시 철폐	216 (13.4)	501 (27.4)	607 (76.0)	154 (8.3)	660 (35.5)	578 (37.8)
10년 내 철폐	373 (23.2)	905 (49.4)		599 (31.7)	971 (52.3)	753 (49.2)
20년 내 철폐	441 (27.4)	12 (0.1)		168 (9.0)	169 (11.0)	
초민감 (양허제외, 부분감축, TRQ, 계절관세 등)	581 (36.1)	413 (22.6)	192 (24.0)	1,115 (60.0)	55 (3.0)	31 (2.0)
계	1,611 (100.0)	1,831 (100.0)	799 (100.0)	1,858 (100.0)	1,857 (100.0)	1,531 (100.0)

주: 1) 여기서는 임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과 수산물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6단위 기준임.

3) 한·중 FTA의 경우 농축산물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출처: 서진교(2014. 11), “한·중 FTA,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선집중」 제186호, GS&J, 표 1을 재인용

2) 농수산부문에 주는 시사점

- 한·중 FTA로 구매력을 갖춘 13억 명의 농식품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 농식품 수출 증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한·중 FTA로 앞으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주력 농식품은 양허제외나 또는 15~20년에 걸쳐 중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대중 농식품 수출확대에서 단기 관세철폐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력 농식품인 조제분유나 인삼류, 필터담배, 생우유 등은 중국이 수입급증을 우려해 양허에서 제외시켰다.
 - 그 외 주종 수출품인 인삼음료나 유자차, 고추장, 간장, 된장 기타 과일주스(감귤, 사과) 등도 15~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주력 농식품에 대한 중국의 양허 내용 ■

품목	2011~12년 평균 대중 수출액 (백만 달러)	중국의 관세율 (%)	중국의 양허안
자당(고체)	137.7	50%	양허 제외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47.7	15%	양허 제외
라면	33.2		20년 철폐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29.0		15년 철폐
홍삼(본삼)	27.7	20~30%	15년 철폐 양허 제외(건삼)
밤(미탈각)	23.9	35%	양허 제외
필터 담배	20.2	25%	양허제외
유자 (기타방법 조제)	20.0	20%	20년 철폐
쇠고기 (냉동)	1.2	12%	15년 철폐
고추장	2.6	21%	20년 철폐
소시지	1.3	15%	10년 철폐
기타 연유	2.6	10%	양허 제외
팽이버섯	0.4	13%	10년 철폐
인조꿀	1.5	30%	양허 제외
토마토 케첩	1.7	15%	10년 철폐
탁주(막걸리)	1.4	40%	20년 철폐
간장	1.3	28%	20년 철폐
우유조제품(유아용 분유)	1.3	15%	양허 제외
된장	0.7	21%	20년 철폐
홍차	1.4	15%	10년 철폐
기타 감귤류 주스/통조림	0.5	18%(주스), 20% (통조림, 기타)	15년, 20년 철폐

출처: 농수산물 무역정보(www.kati.net)

- 다만 수산물 중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국 수출 수산물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10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산물의 대중 수출증대에 관세철폐의 효과가 기대된다.

* 특히 김(25.7백만 달러), 넙치(24.3백만 달러), 해삼(6.2백만 달러) 등은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수출수산물 이다.

● 그러나 한·중 FTA로 인하여 대중 수출에 있어 관세 보다 큰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먼저 비관세장벽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해야 하며, 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예상하지 못한 비관세장벽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그 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 특히 통관과 무역원활화에서 관세법령이 모든 지역세관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일관성), 통관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전담하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 이 부분은 특히 중국 현지의 우리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농식품 수출의 통관 원활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상품위원회 산하에 비관세조치 작업반이 설치되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가 보다 용이해졌다. 특히 분쟁해결절차 내에 '중개(medi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비관세조치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 중개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 당사자 양측은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된 해결책은 구속력을 갖는다.

● 우리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해당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 및 성 단위의 담당기관이 지정되었다.

- 이에 따라 향후 농수산업계에서도 중국의 관련 기업과 합작과 협력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만큼 투자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 대중국 주요 수출품인 난류의 경우 대표적인 투자협력 사업이다. 고품질 양란생산의 핵심 기술인 우수한 종란, 종묘 등의 생산 및 재배·사양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토지, 자본, 노동력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중국 내 고소득층 수요는 물론 제3국 시장진출을 과감히 추구할 필요가 있다.

● 규범분야에서의 경쟁도 중국내 우리 기업의 차별적 요소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 경쟁부문에서 투명성·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의 원칙 등 경쟁법 집행원칙이 보장되며, 특히 공기업에도 경쟁법 적용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 경쟁법 집행원칙이란 경쟁법을 집행할 때 상대국 국민에게도 자국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이 금지되며,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 상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중국 내의 우리 기업과 중국의 국영기업 간에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지재권 분야의 법 집행 강화도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

- 한·중 FTA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WTO의 지재권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폭 넓게 보호하는 한편 이의 집행을 강화시켰다.
- 따라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압류 및 폐기도 명문화되었다.
- 이러한 환경변화는 고품질·안전성을 토대로 우리 농식품의 브랜드화를 통해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대중 농식품 수출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하여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인정하였다. 이에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유지가 한·중 FTA를 통해 명시적으로 확립되었다.
- 따라서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에 우리나라의 주요 농식품을 소개·판매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이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알리바바에 우리나라 24개 업체 872개 우수 농식품을 입점시킨 바 있다. 향후 이들 농식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전

달되고,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판매전략을 수정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아울러 한류 스타들의 농식품 홍보대사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농식품을 수출하는 방안도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 **그 동안 양국간 최대의 현안이었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문제에 대해 향후 중국정부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이번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국 측이 동 문제가 FTA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FTA를 통한 해결에는 실패하였다.
- 그러나 한·중 양국의 수산부문협력 파트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명문화함으로써 불법조업 방지의 기초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향후 중국에게 ‘책임있는 어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Ⅱ. 환율 변동의 원인 및 영향

작성자: 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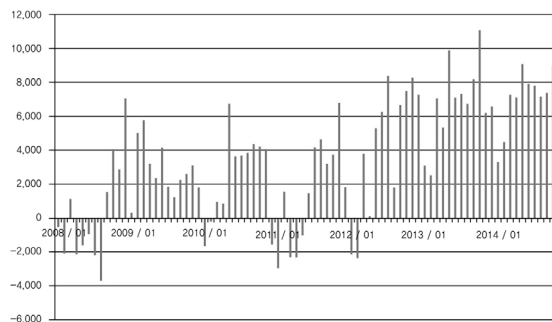
1. 환율 동향
2. 미, 일 양국의 통화정책
3. 향후 전망 및 영향

1.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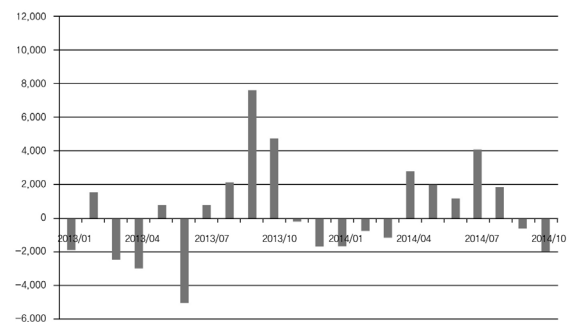
❖ 달러대비 원화 환율은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상승해 2014년 11월 말 기준 1100원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 지속적인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심리의 위험 선호적인 성향 회복 등은 2014년 상반기 중 원화 강세의 원인이다.
 -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12년 2월에 적자를 기록한 이후 32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험 회피도가 낮아지면서 올해 2/4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었다.
-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점차 축소되어 2014년 10월 양적완화가 중단됨에 따라 달러 유동성 위축이 우려되면서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한 2013년 12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가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적완화의 중단도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 경상수지 ■



■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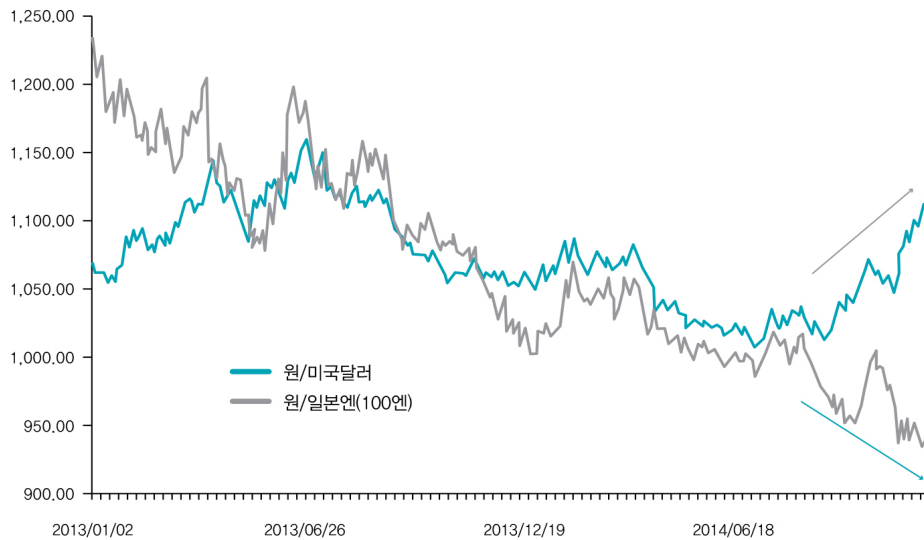


● 반면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11월 26일 현재 943원/100엔을 기록해 엔화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 원/엔 환율 하락은 원/달러 환율 상승 폭보다 엔/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 외환시장에 원/엔 직접 교환시장이 없어 원/엔 환율은 원/달러, 엔/달러 환율의 재정환율로 정해지고 있다.

■ 원화 환율 ■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ECOS)

2. 미, 일 양국의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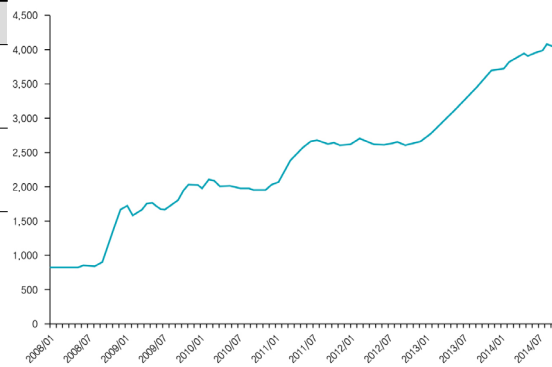
● 미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발발로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고 3차례에 걸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 기준금리인 Federal Fund Rate를 0~0.25%까지 낮추면서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해 양적완화(비전통적인 통화정책)를 사용하였다.
 - 양적완화 정책은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본원통화의 양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

	기간	규모
제 1 차	2008. 12 -2010. 3	국채 3000억, MBS 1조 4500억
제 2 차	2010. 11 -2011. 6	장기국채 6000억
제 3 차	2012. 9 -2014. 10	MBS 월 400억, 장기국채 월 450억, 2013년 12월 이후 매입 규모 축소

■ 미국의 본원통화 ■



출처: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0-2,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 미연준의 정책목표는 실업률과 물가의 안정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중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였다.
 - 미연준은 구조적인 실업을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목표에 대한 수치적인 목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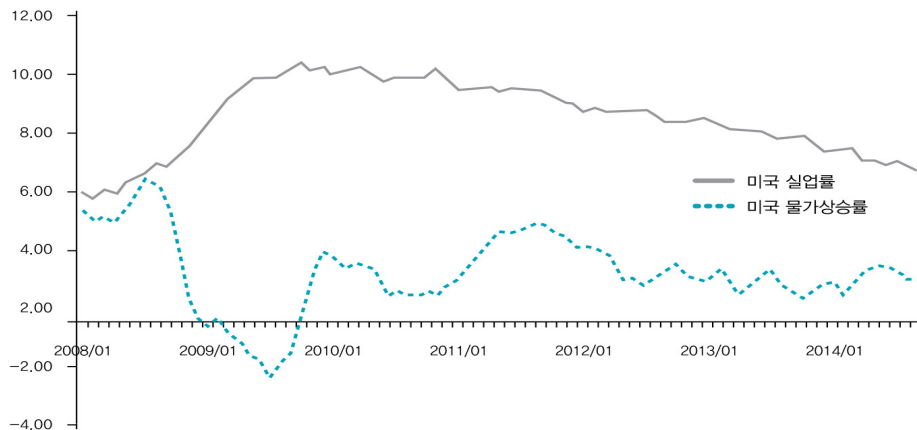


- 이는 통화확대정책은 물가상승을 불러오고 경기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실업률과 물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의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도였다.
- 한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물가안정은 중기목표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금융위기 중 미국의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은 크게 하락하여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 2014년 9월 미국의 실업률이 5.9%로 하락하자 양적완화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였다.

- 제3차 양적완화를 시작하면서 미연준 의장은 실업률 6.5%를 목표를 제시하였다.
 - 물가 불안이 야기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였다.
- 2013년 12월에 미국 실업률이 6.7%로 하락한 이후 2014년 4월 6.3%로 하락해 기준치를 하회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9월 5.9%를 기록하였다.
 - 이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2%대를 하회하고 있어 양적완화의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

■ 미국 실업률 및 물가상승률 ■



출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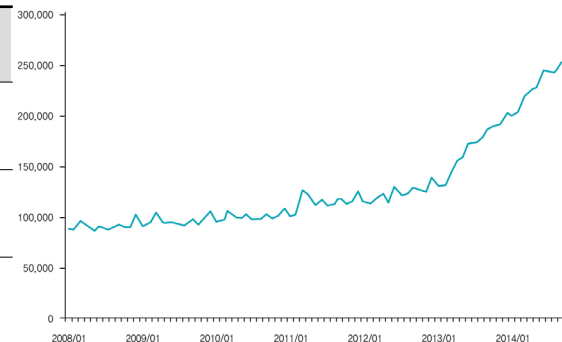
2012년 말 아베 정부의 출범으로 일본도 양적완화정책을 천명하였다.

- 물가안정목표를 2%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통화확대를 통해서 본원통화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다.

■ 일본의 양적완화 ■

	내용
인플레이션 목표	2년 이내 2%
장기국채 매입	매월 7조엔
리스크 자산 매입	ETF: 연간 10조엔 J-REIT: 연간 300억엔

■ 일본의 본원통화 ■



출처: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풀 보고서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2014년 10월 31일에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 장기국채의 연간 보유 잔액 증가폭 확대, 장기국채 매입 평균잔존기간 연장 등 본원통화 연간 증가폭이 이전의 양적완화에 비해 연간 10~20조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향후 전망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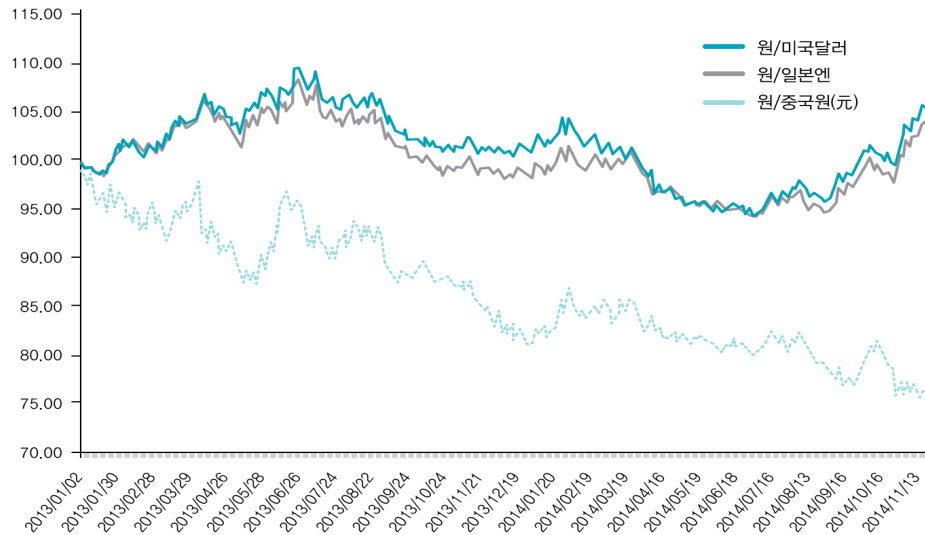
- ◆ 미국의 통화정책은 양적완화 종료 이후 이자율의 정상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통화정책은 아베총리의 재집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명확한 목표(실업률과 물가안정)를 지닌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불안이 나타나지 않고 실업률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2015년 상반기 이후 기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은 소비세 문제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아베총리가 재신임을 받기로 결정하여 양적완화의 지속성 또한 이에 달려있다.
 - 일본 경제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 문제로 경기위축이 나타났으며, 큰 폭의 엔화 약세에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 따라서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 국제금융시장이 우리나라의 수출 특히 농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 일본 수출에서는 부정적이나 이외의 지역의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 대 일본 농산물 수출에 있어 엔화 약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일본의 통화확대정책의 효과가 경기부양을 가져와서 엔저의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재 엔저의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해 그 부정적인 효과가 분석결과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 일본, 중국 통화 대비 원화 환율 ■



주: 2013년 1월 2일 환율을 기준(100)으로 지수화한 환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 반면 농수산물 수출이 많은 미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가 격경쟁력 확대가 기대된다.
 -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이후 원화환율은 대 달러 및 대 위안화 대비 상승하였다.
 - 원화 대 달러환율의 절하속도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빨라 엔화 이외의 통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절하되고 있다.
 - 특히 중국이 통화확대정책을 취했으나 중국 외환제도의 경직성(바스켓 제도)으로 인해서 대위안화 원화환율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원화약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국제 금융시장

작성자: 양다영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1. 국제 외환시장

- 미국 달러화 가치는 미국 3/4분기 GDP 호조,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등으로 201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미국 3/4분기 GDP 성장률이 3.5%(전기대비 연율)를 기록하여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월 FOMC에서는 예정대로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였다(10/29).
 - 반면, 일본은행은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본원통화 증가 목표를 연간 60~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결정하였다(10/31).
 - 이처럼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부각되면서 엔화약세가 심화되어 엔/달러 환율은 2007년 7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EU의 유로존 성장을 전망 하향 조정(11/4), ECB 총재의 추가 통화부양책 시행 시사(11/6) 등으로 하락하였다.
- 원/달러 환율은 10월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약세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으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하였다.

■ 주요 환율 동향 ■

구분	2014.11.21 (현재)	2014.10.21 (1개월전)	2013.11.21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 ¹	88.31	85.303	81.073	3.53%	8.93%
달러/유로	1,2391	1,2716	1,3482	-2.56%	-8.09%
엔/달러	117.79	107.00	101.16	10.08%	16.44%
위안/달러	6,1249	6,1213	6,0933	0.06%	0.52%
원/달러	1113.8	1054.7	1062.9	5.60%	4.79%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출처: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 강세 지속, 주요국 경기부진으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우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유생산 증가 등으로 배럴 당 80달러 이하로 하락하였다.

- 유로존의 9월 산업생산(전월대비 0.6% 증가), 중국의 10월 산업생산(전년대비 7.7% 증가)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석유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 미국 등 북미 지역의 원유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OPEC의 감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원유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생산은 점차 증가하여 12월에는 일평균 900만 배럴, 2015년은 일평균 94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972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STEO 2014.11).
 - 이에 따라 미국 석유소비의 수입의존도도 2005년 60%에서 2013년 33%로 하락한데 이어 2015년에는 21%로 1969년 이래 최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여부를 두고 사우디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감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OPEC 총회(11/27 예정)를 앞두고 감산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11/21)하면서 유가가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 국제유가 동향 ■

(단위: \$/b)

구분	2014.11.21 (현재)	2014.10.21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WTI유	76.50	83.13	-7.98%
Dubai유	75.90	84.33	-10.00%
Brent유	79.73	85.80	-7.07%

출처 : Bloomberg.

- 시카고에서 거래된 주요 곡물 가격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대두 가격 상승이 다른 곡물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가운데 미국의 한파에 따른 작황 우려로 상승하였다.
- 대두 가격은 수확 지연으로 인한 단기적 공급부족 현상으로 대두박 현물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 대두 수확은 10월 26일을 기준으로 70%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5%p, 5년 평균대비 6%p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원활하게 진행되어 11월 9일 기준 90%가 수확이 완료되었다(USDA, Crop Progress Report).
 - 대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맥, 옥수수 등 다른 곡물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다.
 - 또한 미국 중서부 지역의 한파로 옥수수의 수확 및 파종, 겨울밀의 생장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 한편, 미 농무부(USDA)는 소맥,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2014/15년 시즌 생산량 및 재고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WASDE 2014.11).
 - 2014/15년도 미국의 소맥 생산량 전망치는 20억 3,500만 부셸에서 20억 2,600만 부셸로 하향 조정된 반면, 수요는 유지되면서 기말 재고량 전망치도 6억 5,400만 부셸에서 6억 4,400만 부셸로 하향 조정되었다.
 - 옥수수의 경우에도 생산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144억 7,500만 부셸 → 144억 700만 부셸)되면서 기말 재고량 전망치가 하락한 반면, 대두는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39억 2,700억 부셸→39억 5,800억 부셸).

■ 주요 곡물 가격 동향 ■

(단위: ¢/bu)

구분	2014.11.21 (현재)	2014.10.21 (1개월전)	전월대비 상승률
소맥	547.25	519.25	5.39%
옥수수	372.75	356.00	4.71%
대두	1039.00	964.25	7.75%

주: 근월물(최근 선물) 기준

출처: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한·중 FTA 타결: 평가와 시사점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발행일 : 2014. 11.

발행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9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408

- 「aT get」은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